

1. 개정 이유

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
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
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명칭 변경(안
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)

- 1)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의
명칭을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3. ~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)”을 “(한국중소
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
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60호의 단체명란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
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② 중소기업벤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9조제15항제26호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
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중소기업유통센터 <u>설립승인</u> 신청서류 등)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	제26조(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<u>설립승인</u> 신청서류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중소기업유통센터</u> 정관안	1.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----- -----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